## 25. 타이어 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 남 **나이** 47세 **직종** 고무제품제조업(타 **업무관련성** 높음

- 1. 개요: 근로자 (망)최○○은 1992년 12월 21일 OO타이어(주)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OO병원을 내원하여 폐암 말기로 진단받았고 요양치료중 사망하였다
- 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 (망)최○○은 (주)OO공장에 입사하여 생산관리과 기동반에 소속되었으며 1995년 기동반 해체까지 가류과 업무를 돕도록 배치되었고 기동반 해체이후에는 본인의 자원으로 가류과에 정식배속되어 1997년 12월까지 약 5년간 그린타이어운반작업 및 버핑작업을 수행하였고, 1998년 1월부터 LTR팀 사상공정으로 배치되어 이전과 동일하게 버핑작업을 수행하였다. 사상 공정은 버핑, 트리밍, 불량제품 수리의 세부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. 가류 처리된 타이어는 육안 검사를 거친 후 불량제품은 수리 공정으로 보내고 이상이 없는 제품은 트리밍 및 버핑 공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이상 유무를확인한다. 망인이 수행한 버핑작업은 타이어를 규격별로 선별하여 버핑기에 투입하고 버핑기의 각도 연마석거리, 높이를 맞추어 작업을 하며, 버핑 후 백테 오염 방지제(블루페인트, 제품명: BP-500, 명칭: Poly vinylacetate)가 잘 도포 되었는지, 버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검사과로 보내는 직무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3. 의학적 소견: 2007년 1월 30일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비결핵성질환(폐종괴추정 좌상) 소견이 발견되었으며, 동년 4월 30일 야간근무중 머리가 아파와 퇴근 후 OO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'폐암 말기'로 진단받았고 입원치료 및 OO대학병원에서의 2차례 걸친 항암 치료를 하였으나 OO대학병원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불가함을 선고받았으며 이 후 한달가량 요양치료중 9월 12일 사망하였다.
- **4. 결론:** 근로자 (망)최○○ 은
  - ① 약 14년의 타이어 버핑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비소세포성 폐암이 발생하였는데
  - ② 가류 공정의 고무흄 및 버핑 공정의 흡입성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 기간 노출과 위 물질들에 대한 노출력이 폐암발생의 잠복기를 충족하며
  - ③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는 고무산업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하여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암(group 2A)으로 규정하고 있고,
  - ④ 암 발생연령(46세)이 비교적 이르며, 흡연력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

근로자 (망)최OO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.